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BL우리들의달러연금보험

나.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10년 이율확정형

다.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40년, 100세 보증)
		채증형 (10~20년 보증)
		소득보장형 (10~20년 보증)
	보증금액부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

주기 및 이율확정기간

가.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일시납	0세 ~ (Y-8)세	45세 ~ 80세	일시납
	10년 이율확정형		0세 ~ (Y-10)세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 세임.

다. 이율확정기간

보험의 종류		이율확정기간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5년
	10년 이율확정형	10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통화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의 통화로 한다.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US\$15,000 이상으로 한다.

※ US\$ (United States Dollar) : 미국 달러, 미국 화폐 단위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 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7.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US\$100 이상 US\$10 단위로 한다.

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총 인출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초년도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시점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만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8.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시점에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자금을 지급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할 때 생활자금 지급주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생활자금 지급주기, 지급시기 및 기간

지급주기	보험의 종류	지급시기 및 기간
매월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 (60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 (120회지급)
매년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5회지급)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 (10회지급)

다. 미지급 생활자금에 관한 사항

- (1) 보험수익자가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 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한다.
- (2) ‘(1)’의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약관의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한다.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이율확정기간 중에는 ‘1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립이율로 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이하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시이율(%)= 기준금리1 - 0.55%

기준금리1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 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 - 제23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2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바.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율확정기간 중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

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한다)에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적용이율로 한다.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기준금리2 - 0.14%

기준금리2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3-5 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 - 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한다.

(2) 10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기준금리3 - 0.14%

기준금리3 : BARCLAYS Live에서 매일 공시하는 “US Corporate 7-10 years”의 YTM 평균값으로, 평균값은 「공시이율 변경일 - 제8영업일」에서 「공시이율 변경일 - 제4영업일」까지의 5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의 수익률을 사용한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생활자금지급을 선택한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 + 0.5\%}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4) ‘라’ 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가’ 또는 ‘나’ 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한다.

자. 세부적인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1.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및 종류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한다.
-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 (3) ‘(1)’ 내지 ‘(2)’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 내지 ‘(2)’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1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16.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1) 재해장해보험금, 생활자금 및 연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총당하는 경우(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위험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연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 이율로 한다.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최저한도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5.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6.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6.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6.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의 종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장기유지보너스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1.0%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이후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의 2.0%

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

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지급한다.

17. 기타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로 한다.

나.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후에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적립액의 원화 평가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적립액의 원화 평가는 평가일 기준 “한국은행 공시 환율”의 환율(이하 “기준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2) 평가일 종가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고시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3) 장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환율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다.

라.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연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마.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

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 ① 이율확정기간이 지난 계약
 -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후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4)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5) ‘(3)’ 내지 ‘(4)’에도 불구하고,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되는 연금연액은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과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중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다만, 장기요양 및 6대질병 관련 위험률은 전환시점의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 (6) 계약자가 ‘(1)’에 따라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원화로 전환되며, 전환시점, 환산기준일 및 원화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환시점 : 전환신청일
 - ② 환산기준일 : 전환신청일의 전일로 한다.
 - ③ 원화환산율 : 원화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입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원화환산율로 한다.

※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7) 원화로 환산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전환 후 계약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차.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